

# 민족종교의 평신도 운동

조 홍 윤\*

## I. 평신도 개념의 문제

평신도 개념이 6세기 로마 카톨릭 전통에서 성직자(clergy)와의 구분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직자는 그리하여 설교(교육)의 권위를 갖고 성찬을 주재하는 반면, 평신도(laity)는 교회예배 참여를 통해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세속에서 선교를 완성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에서 개신교는 이러한 구분을 부정(ex. John Calvin: 교회 모든 구성원의 집단적 평신도 강조)하기도 하나, 실제 교사·설교·예배의 임무를 지는 성직자가 형성되고 평신도는 자연스럽게 이들과 구분되었다.

이러한 개념 구분이 타종교에 확대·정착되고 논의되어 오나, 이것은 기실 종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힌두교·이슬람·일본종교 등에 그 개념 범주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종교학에서 거론되어 온다. 한국종교에서 평신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문제이거니와, 역사가 일천한 신흥종교로서의 민족종교에서 평신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민족종교들을 아직 형성 중에 있어 성직자 개념이 일반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전통에서 형성된 평신도 개념은 대개 두 가지 형태의 종교생활을 기존 내용으로 삼는다. 하나는 사회 일상생활에의 참여와 관련된 평신도의 종교생활의 목표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 생활의 전적인 참여로부터 이탈하거나 그것을 포기하고 종교적 추구에 전통적으로 몰입하는 형태이다. 이 개념을 민족종교에 적용하여 평신도 개념을 살펴본다.

---

\* 한양대 교수, 민족학

## II. 민족종교의 평신도 개념과 임무

한국 민족종교의 계통과 교단이 워낙 많고 복잡하여 편의상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한얼교의 다섯 종단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우선 그 敎憲 내지 규약에서 평신도의 개념과 그 임무를 확인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였다.

### 1. 천도교 (포덕 114년(1965) 확정·시행된 천도교헌 참조)

천도교에는 교역자 양성 기관이 없다. 그러나 제9장 제72조는 원직·주직·예우직의 3종 교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인은 누구나 선거·피선거권을 갖는다. 이러한 교직은 성직자로 보기 힘들다. 즉 현재는 교회 전체가 평신도인 셈이다. 종합학교를 설립·운영할 계획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천도교의 교세는 아직도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 2. 증산교 (전북 김제군 금산리 용화동의 증산교 규약과 대순진리회 도헌 참조)

증산교나 대순진리회에는 성직자의 일정한 자격 및 임명 절차가 없다. 양쪽 다 임원을 두고 있으나 증산교에서는 선거에 의해 교인 가운데서 교무를 뽑고, 대순진리회에서는 포덕연원의 수효와 교화 실적에 따라 임원 임명기준에 의해 도인이 임원직을 수임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100호 이상 포덕하면 선무, 300호 이상이면 선사, 1000호 이상이라야 선감이 된다. 증산교도들은 포교·교화의 노력을 곧 교조인 상제의 대순 사업을 실천·계승하는 것으로 믿는다. 포교를 전담하는 교직자의 양성이나 포교·전도기관이 미비하고 전문적 포교서 및 교재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가운데, 증산교인들은 주로 포교에만 전념하고 있다.

### 3. 대종교 (대종교 규범 참조)

제6장 교역자의 제134조에 의하면 정치와 정당 생활을 하지 않는 자로서 종신성직인 선도사가 있고, 그 아래로 장차 선도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자격고사를 거친 자가 되는 시교사, 그리고 교인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필요하고 삼일원장의 공천으로 총전교가 선임하는 시교원(선도교원)이 교역자의 범주에 든다. 그러나 교육자 양성 교육기관은 없다. 제11장 흥범 제15조는 교구의 준수, 교리공부, 교인의 천거,

경일준수, 천곡(誠金)헌납 등을 교인의 5대 의무로 규정한다. 교인의 적극적 포교활동이 부족하고 교인의 신앙 조직화가 미숙함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 4. 원불교 (1976년 개정된 원불교 교헌 참조)

원불교는 다른 종단에 비해 그 조직이 정비되어 있고 활동이 왕성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교도는 9인 이상 입교 연원이 될 의무를 가지고, 정한 바에 따른 선거·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리고 교화와 사업을 담당할 출가·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두루 양성하고 있다. 교역자의 호칭은 1976년 '교무'로 통일되었다. 교역자의 호칭 통일과 양성을 위한 기관의 정비 및 노력이 타종단에 비해 두드러지나 성직자와 평신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소태산은 정치와 종교를 수레의 두 바퀴, 가정의 부모와 같다 하여 정교동심(政教同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교구와 직·간접으로 인연이 있는 교도 네 명이 당선되었다. 원불교의 각종 사업을 위한 기관·단체는 이미 사회적 정평이 있거니와, 정치참여는 특기할 만하다.

#### 5. 한얼교 (한얼교 헌정 참조)

한얼교는 교회를 신봉하는 정확도로서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데(제15조), 정확도는 소정 입회절차에 의해 되고 열심히 포교할 의무 및 한님과 정법수도할 의무라는 양대 의무를 지닌다. 그러기 위하여 참교자인 한님의 설법에 의한 신앙지도, 성지순례 참여, 특별 교육 참석, 그리고 자신얼님의 완성으로 사회를 돕고 겨레와 인류를 구제할 것 등을 주요 수행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도 조직에 의한 각 기관의 임원은 있으나 성직자에 대한 규정과 양성기관은 보이지 않는다.

### Ⅲ. 민족종교 평신도운동의 특징

민족종교는 어떤 계통이든 기존의 가치관이나 기성종교에 저항하여 카리스마적인 지도 아래 일어선 신흥종교이고, 다분히 세속적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신도들에게 강력한 공동유대감을 제공하고 신도들의 적극적이고 나아가 과격한 참여를 강조하며, 건강·사업이나 가족번창과 같은 세속적 가치의 실현을 약

속하는 점 등에서 바로 그러하다. 아직은 형성 중에 있는 종교들이므로 성직자 양성기관의 정비와 성직자·평신도의 개념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의 다섯 예에서 살펴본 바, 민족종교에는 성직자 양성과 개념 규정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직은 미분된 상태이나 평신도 종교단체로서의 평신도의 움직임도 종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신도들은 포교활동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순진리회는 그 가운데서도 과격한 포교 방법과 입도한 이들의 재산헌납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민족종교는 그 발생 초기부터 체제로부터의 핍박과 왜곡을 감당하고 유사·사이비 종교로 낙인찍히는 등 한국사회에서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이런 배경과 상황에서 민족종교의 평신도적 사회활동이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일지 모른다. 다만 원불교가 그 동안 각종 조직·사업·포교에서 성공하여 최근 국회의원들까지 배출하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